

부산지방법원 2024. 8. 28 선고 2024나4312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8. 28 선고 2024나43126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. 10 선고 2023가소316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명

담당변호사 정지윤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원호

변론 종결 2024. 7. 17.

판결 선고 2024. 8. 28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. 10. 선고 2023가소3164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5,397,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부산 강서구 D 공장 용지 1772.9m²와 위 지상 건물 2동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기구를 낙찰받아 2019. 10. 23. 매각대금을 납입하였다.

나. 피고는 원고, 주식회사 E,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. 12. 4. 인도명령을 받았고, 위 인도명령에 기초하여 2020. 3. 20.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사무소 H 부동산인도집행 사건(이하 '이 사건 인도집행'이라 한다)이 진행되었다.

다.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I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8. 31.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을 35,454,730원으로 정하는 결정(이하 '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결정'이라 한다)을 하였다. 위 결정은 2020. 9. 17.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인도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E 소유의 물건을 집행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 1층 마당에 있는 샌드위치판넬 철골조 가건물을 철거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합계 25,397,155원을 모두 원고에게 청구하여,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. 그러나 위 집행비용 25,397,155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25,397,1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

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금액에 주식회사 E 소유의 물건을 집행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과 가건물을 철거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위 집행비용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당연 무효라거나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,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가 위 집행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이미경

판사이효신

판사이준민